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630호 2023. 6. 7.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3-608호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1
- 정선군 공고 제2023-614호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10
- 정선군 공고 제2023-627호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21
- 정선군 공고 제2023-628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39
- 정선군 공고 제2023-645호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63
- 정선군 공고 제2023-656호 정선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70

○ 정선군 공고 제2023-706호 2023년 강원도 시·군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	73
○ 정선군 보건소 공고 제2023 - 28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4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13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1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14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4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15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4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3-608호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익 보호 및 능동적 업무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범위(안 제1조 ~ 제4조)

- 1) 공무원(「정선군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포함)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피소되거나 기소된 경우
- 2) 전출 및 퇴직공무원 포함(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로 한정)
- 3) 소송비용: 각 심급마다 2,000만원 범위 내 지원

나. 지원 신청(안 제5조)

-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2) 「한국지방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우선 신청

다. 지원 결정 및 결과 제출(안 제6조 ~ 제7조)

- 1)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 결정
- 2)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라. 소송비용의 반환(안 제8조)

- 1) 유죄판결의 확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2)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경우

마. 소송심의위원회(안 제9조)

심의내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관)

○ 전 화: 033-560-222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jah1111@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소속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정선군 소속 공무원

나. 「정선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정선군에 종사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감정비용 등 소송진행 관련 비용으로써 정선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제3조(지원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1. 고소·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법원의 심급(이하 “심급”이라 한다)마다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선임비용 지급 증명서류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정선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소송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① 공무원등의 소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선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남(), 여()		
	담당업무									
심 급		☐ 기소 전 수사단계 ☐ 1심 ☐ 2심 ☐ 3심								
사건번호		민사			고소·고발			공소		
		법원	접수일	사건번호	경찰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검찰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법원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신청금액		총 계			변호사보수			그 밖의 비용		
		원			원			원		
사건개요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①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입증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 보고서		
사 건 명		
당 사 자	원 고	
	피 고	
판 결 결 과		
판 결 이 유		
대 책		
첨 부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정선군 공고 제2023-614호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상 시설규모 규정(안 제3조)

다. 주민지원 기금 중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수수료 징수금액에 따른 산정 비율을 20%로 정함(안 제4조)

라. 주민지원기금 사용 용도 마련(안 제5조)

마.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1조)

바. 지역주민 감시요원 인건비 기준을 정함(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5. 18. ~ 2023. 6. 8.(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8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환경과
- 전 화 : 033-560-2346
- 팩 스 : 033-560-2589
- 이메일 : jcy2816@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직접방문, 팩스, 이메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단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①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36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 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마을발전기금 지원사업
2. 기타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사업(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주변지역으로 한다)
2.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
4. 기타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6조(주민지원기금 관리 공무원)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하 “주민지

원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담당 팀장

제7조(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민지원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한다.

1. 환경과장
2.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
3.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군의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 대표
 - 나. 지원협의체 구성원
 - 다. 기금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당해년도 정선군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기준액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 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1.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3-627호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수도법」 개정 및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 반영(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0조)
 - 간이급수시설 ⇒ 소규모수도시설.
- 소규모급수시설 예산 지원범위 명문화(안 제9조)
 1.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원개발 및 배수탱크 설치
 2. 취수원 및 배수탱크 보호시설 등 설치 및 보수
 3. 심정의 모터펌프 설치 및 교체
 4.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정수시설의 설치 및 보수
 5. 오염원 유입에 따른 배수탱크 청소 및 사후관리
 6. 수도본관 및 노후관 교체
-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신청 범위 규정(안 제11조)
 -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급수시설 이용가구가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 관리비용 부담범위 규정(안 제14조)
 -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다만, 정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마을상수도 요금징수 조문 삭제

- 근거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5. 22. ~ 2023. 6. 12.(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연 락 처 : 전화(033-560-2522), 팩스(033-560-2940)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상하수도사업소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tostay@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해당지역의 군수를”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1에 의하여”를 “별표 1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한 수질검사”를 “따른 수질검사”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를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로,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를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사고에 의하여”를 “사고로 인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예산”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원 개발 및 배수탱크 설치
2. 취수원 및 배수탱크 보호시설 등 설치 및 보수
3. 심정의 모터펌프 설치 및 교체
4.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정수시설 등 설치 및 보수
5. 오염원 유입에 따른 배수탱크 청소 및 사후관리

6. 수도본관 및 노후관 교체

제10조 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관리비용”을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등) ①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중 해당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가구가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제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나 협의회는 사업 대상 선정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광역상수도 및”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군수에게 폐지허가를 받아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의 단서조항”을 “제1항의 단서 조항”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 “(시설의 인가 및 폐지)”를 “(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관리비용) ①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 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 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와 소규모급수 시설-----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생략) 4.“관리자”란 마을상수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5. ~ 6.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 -----. 1.-----제3조제9호에 따른 ----- -----. 2.----- --제3조제14호에 따른 ----- -----. 3. (현행과 같음) 4.----- ----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 -----. 5. ~ 6. (현행과 같음) 7.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

현행	개정안
제3조(정비계획수립)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u>간이급수시설</u> 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u>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u> 제3조(정비계획수립) ①군수----- ----- ----- ----- <u>소규모수도시설</u> ----- -----.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u>제7조의 규정에 의한</u>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 <u>제7조에 따른</u> ----- ----- -----.
제4조(시설의 관리) ①(생략)	제4조(시설의 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u>의한</u>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u>따른</u> ----- -. ----- -----.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 -----

현행	개정안
알리는 안내판을 <u>별표1에 의하</u> <u>여</u> 설치하여야 한다.	--- <u>별표 1에 따라</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질검사) ① (생략)	제6조(수질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제1항에 <u>의한 수질검</u> <u>사</u> 결과를 <u>제16조의 규정에 의</u> <u>한</u>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u>따른 수질검사</u> - ----- <u>제16조에 따른</u> ----- -----.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u>의하</u> <u>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u> ,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 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u>의하여 기록</u> <u>· 보존하여야 한다</u> .	제7조(점검) ①----- ----- ----- ----- ---- <u>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u> <u>며</u> ----- ----- ----- <u>따라 기록·보존하</u> <u>여야 한다</u> .
②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u>의한</u> 점검을 실시한 경 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u>따른</u> ----- ----- -----.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u>제6조</u> <u>의 규정에 의한</u> 수질검사 및 <u>제</u> <u>7조의 규정에 의한</u> 점검결과 나 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제8조(개선조치) ----- <u>제6조</u> <u>에 따른</u> ----- <u>제7조</u> <u>에 따른</u> ----- -----

현행	개정안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 ----- ----- -----. 제9조(유지보수) ① ----- ----- ----- 제10조에 따른 ----- ----- 사고로 인해 ----- -----. ---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 -----. 1.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원 개발 및 배수탱크 설치 2. 취수원 및 배수탱크 보호시설 등 설치 및 보수 3. 심정의 모터펌프 설치 및 교체 4.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정수시설 등 설치 및 보수 5. 오염원 유입에 따른 배수탱크 청소 및 사후관리 6. 수도본관 및 노후관 교체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u>간이급수시설</u>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세워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 ----- ----- ----- ----- <u>소규모</u> <u>수도시설</u>----- ----- -----. <u>제11조(소규모수도시설의 지정 등)</u> ① 주민이 소규모수도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중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가구가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설치에 대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제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및 개수·보수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나 협의회는 사업대상 선정부지의 토지사용승낙

현행	개정안
제11조(시설의 인가 및 폐지) ① 소규모수도시설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2. 시설물 준공도면(설비 및 관망도) 3. 수질검사성적서	<삭 제>
②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 등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도 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 시설 시설개량 등으로 통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 ----- . 다만, 광역상수도 및 ----- ----- ----- ----- 예외로 한다.
③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	② ----- ----- ----- 별지 제1호서식의

현행	개정안
<u>에게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u> 1. (생략)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u>제2항의 단서조항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생략) <u>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u> <u>제3장 관리비용</u> <u>제13조(요금징수) ①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u> <u>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u>	<u>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u> ----- -----. 1. (현행과 같음) 2. ----- <u>제1항의 단서 조항</u>----- ----- 3. (현행과 같음) <u>제13조(건강진단)</u> ----- ----- ----- <u>제5조에 따라</u> ----- -----.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하여 징수 할 수 없다.</u> <u><신 설></u> <u>제14조(관리비용) ①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제15조(계량기) ① (생 략)</u> <u>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u> <u>제21조(관리의 위탁) ①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u>	<u>제3장 관리비용</u> <u>제14조(관리비용) ①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u> <u>제15조(계량기) ① (현행과 같음)</u> <u>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u> <u>제21조(관리의 위탁) ①-----</u> -----

현행	개정안
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제16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 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 탁할 수 있다.	----- <u>제16조에 따라</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수도법

제47조(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정선군 공고 제2023-628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위임사항 규칙 제정.

2.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농막) 지방·광역상수도 공급 제한(안 제2조)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가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
- 급수공사 범위 규정(안 제4조)
 - 상수도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수질사고의 예방 및 수도사용량의 계량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과 교차접속 제한
- 급수설비의 개량지원(안 제14조)
 - 정선군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
 1. 단독주택의 경우 : 50만원 이하
 2. 공동주택의 경우 :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
- 급수설비 개량지원 대상 순위(안 제14조)
 1. 사회복지시설
 2.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

3. 제정 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5. 22. ~ 2023. 6. 12.(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연 락 처 : 전화(033-560-2522), 팩스(033-560-2940)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상하수도사업소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tostay@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급수공사 제공 동의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준공된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

나. 공사 중인 건물의 경우: 건축신고·허가서 사본

② 급수공사의 대상이 신청자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건물 사용승낙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 접수 및 승인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군수는 건축물의 급수공사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와 합의를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공용급수장치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허가를 급수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관리의무 또는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용급수장치가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거나 공용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용급수장치를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급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로 한다.

② 군수는 상수도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수질사고의 예방 및 수도사용량의 계량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과 교차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관 또는 급수관을 다른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30c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한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급수공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보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준공검사) 대행업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 구간까지를 산정할 것
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 구간과 분리매설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할 것
3. 기존배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하여 산정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에 따라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 표준공사비를 고시한다. 다만, 비용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표준공사비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신청자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 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파손, 망실 또는 동파된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구입·설치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폐전 신청)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개전·중지·폐전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급수 개전·중지·폐전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과 최종 납입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급수장치 개전·중지·폐전 관리대장에 제1항에 따라 개전·중지·폐전한 급수장치를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수도계량기의 점검) 군수는 조례 제33조에 따른 사용수량의 계량을 위해 수도계량기를 점검하는 경우 수도사용량 및 사용료 등 수용가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를 군

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도계량기를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제13조(급수장치의 임시 사용) 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를 임시로 설치하여 급수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별표 2에 따른 일반용 누진요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제14조(급수설비의 개량지원 등) ①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선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 50만원 이하(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

④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비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설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입금통장 사본

3. 노후급수관 증명자료(수질검사성적서)

제15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급수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급수시설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 발주한 유수율 제고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급수공사 신청서

급수전위치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용 도				전 화 번 호 (H.P)	
건물 현황		건축번호	연월일	설치계량기 (구 경)	m/m
					전
허가	준공			공사 구분	신설, 개조, 증설, 위치변경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 ※ 소규모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사용관로를 상수도급수관로와 교차접속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 ※ 공사비 전부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고,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본관에서부터 수도계량기 이전 또는 대지경계(담장) 옥외시설 전부를 정선군에 기부채납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준공된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
2. 공사 중인 건물의 경우 : 건축신고·허가서 사본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수탁급수공사 제공 동의서

■ 건 명 :

■ 일 시 :

■ 장 소 :

■ 내 용

연 번	내 용	비고	
1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거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며, 향후 본 급수설비를 이용하여 분기 시 별도의 동의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수용	해당 없음
2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급수관 매설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물의 진입로에 매설하되,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유 토지인 경우 공유자 전부의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 신청인 토지를 포함하여 수도관이 매설되는 모든 토지의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미첨부시 급수공사신청 불가)	수용	해당 없음

[급수공사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날인)

연락처 :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 접수 및 승인대장

연번	건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승인일자	주소	성명	연락처	납 입 액					영수증	계량기 규격(m/m)						관로(M)					계량기 번호	공무소	준공일	시공요청일자	구경	지급품의
								총 계	공 사 금	원 인 자 부 담 금	수 수 료	관 급 자 재		13	20	25	40	50	가	16	20	25	40 ~ 50	50 이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협 의 서

- 건 명 :
 ■ 협의일시 :
 ■ 협의장소 :
 ■ 참 석 자(등록부)

소 속	성 명	연 락 처	서 명

■ 협의내용(상호확인)

협 의 내 용	결 정 사 항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준 공 확 인 서

공 사 위 치		접수번호	
성 명		전 화 번 호	
계량기구경		계량기 번호	
도 급 액			
시공지시일	20 년 월 일	착 공 일	20 년 월 일
준공예정일	20 년 월 일	준 공 일	20 년 월 일
준공확인일	20 년 월 일	참 고	사진(전, 중, 후) 첨부

위 공사에 대하여 검사한바 설계내역과 같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 관부설 심도는 설계내역 이상으로 시공되었음
- 부속품은 규정된 KS자재를 사용되었음
- 공사시행으로 파손된 도로는 원상복구 되었음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수용가(입회자) (인)

시공 회사: (인)

준공확인자: (인)

정 선 군 수 귀하

■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납입 통지서

주소			
성명			
계량기대금			
원인자부담금			
설계수수료	-		
준공검사수수료	-		
관급자재	-		
순 공사비	-		
합 계	-		

상기 금액을 상수도급수공사비로
20 년 월 일까지
납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

군 금고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주소	0		
성명	0		
계량기대금	-		
원인자부담금	-		
설계수수료	-		
준공검사수수료	-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순 공사비	-		
합 계	-		

위 금액을 상수도급수공사비로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

상하수도사업소(관리)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주소	0		
성명	0		
계량기대금	-		
원인자부담금	-		
설계수수료	-		
준공검사수수료	-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순 공사비	-		
합 계	-		

위 금액을 상수도급수공사비로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팀) 보관용

영 수 증

주소	0		
성명	0		
계량기대금	-		
원인자부담금	-		
설계수수료	-		
준공검사수수료	-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순 공사비	-		
합 계	-		

위 금액을 상수도급수공사비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

수 용 가 보 관 용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급수 (개선.중지.폐전) 신청서

수용가 번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비 고			
사 유	건물개조, 건물철거, 기타 ()				
계량기구경	m/m	계 기 번 호		철거지침	m ³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증 사본 2. 최종납입 영수증 사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급수(개선.중지.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급수장치 개선·중지·폐전 관리대장

연 번	수용가 번호	지 침	성 명	주 소	연락 처	구 경	계기 번호	구 분	철거 일자	개 전 일자	비 고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

업 종 별		수용가 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주 소					
계량기구경	m/m	계량기번호		지침량	
시 험 료	원정				
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사용량	사 용 료	금월사용량	사 용 료	비 고	

위와 같이 수도사용량이 증감되어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관 인

수도미터

상기 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서

업 종 별		수용가 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주 소					
계량기구경	m/m	계량기번호		지침량	
고 장 내 용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고장신고를 하오니 수리(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관 인

수도미터

상기 물품을 수리(교체)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주 택 소유자 정 보	성 명		건축물 정 보	소 재 지	
	주 소			주택형태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휴대전화			준공년도	
	집 전 화			주택연면적 주거전용면적	
	기타사항 (수급자 등)			공사구분	교체, 세척 등
개량내용 및 공사방법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 하겠으며, 공사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리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소유자와의 관 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확인자 : 소속 성명 (서명)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① 공사비견적서 또는 계약서 (500만원 이상은 설계서 첨부) 사본 1부 ② 입금통장 사본 1부 ③ 노후급수관 증명자료 : 수질검사성적서 ※ 일괄신청시 세대별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정급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고 위 치				
신 고 내 용				
신 고 자	주 소		연 락 처	
	성 명		계좌번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정급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관계법령 발췌】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⑦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혼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들어있는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선군 공고 제2023-645호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
-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12.31.만료됨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제3항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주요내용

-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 교통관리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우)2613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2) 전화: 033-560-2512

3) 팩스: 033-562-6400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접수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① 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u>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① ----- <u>2028년</u> ----- ----- -----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

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공고 제2023-656호

정선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재난재해 발생 대비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31일

정 선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정선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내 시설물 관리 및 각종 유해요소로부터 시설 입소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이해 관계인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3.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정선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 나. 시 행 자: 정선군 복지과
- 다. 설치장소: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96-4번지 일원
- 라. 설치대수: CCTV 52대

4. 공고개요

- 가. 공고기간: 2023. 5. 31.~2023. 6. 20.
- 나. 공고방법: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 ※ 정선군청 홈페이지→열린군정→군정소식→고시/공고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복지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 5. 31.~2023. 6. 20.(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기한 내 도착분까지 유효), 팩스

다. 제 출 처: 정선군 복지과

- 우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군청 복지과)
- 전화: 033-560-4068
- 팩스: 033-560-2588

라. 기재사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

마. 공청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합니다.

「 정선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예고(안)		수정제출(안)	사 유	

정선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3-706호

2023년 강원도 시·군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

'23. 6.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도 신고·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기가 도래하는 강원도 시·군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3년 6월 5일

정 선 군 수

1. 세목 및 내용

- 연장세목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중단기간 : 2023. 6. 9.(금) 18:00 ~ 2023. 6. 12.(월) 07:00
- 상세내용 : 위택스 강원도 신고·납부 서비스 중단 안내
 - 지방세 자료변환으로 표준지방세시스템이 중지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도내 신고·납부 중단

2.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 장 세 목	'23.6.9.~6.12. 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시·군세
연장된 납부기한	2023. 6. 13.(화)

3. 기타사항

- 시·군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정선군청 세무과(033-560-2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보건소 공고 제2023 - 28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2023. 3. 28.)에 따른 변경 내용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법 조항 및 변경된 단어 반영(안 제2조, [별표])

1)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신설

※ 제34조제1항 :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 제2항

3)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 제3항

4) 조례 제2조제2항 및 별표2 개별기준 제2항

: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5) 조례 제2조제3항 및 별표2 개별기준 제3항 : 유사명칭 → 동일명칭

나. 조례 6조(준용규정) 삭제(안 제6조)

다. 과태료 납부 대상 : 「지역보건법」 제22조 3항, 제23조,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3. 입법예고 : 2023. 5. 19. ~ 2023. 5. 29.(1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6127)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연락처 : 전화(033-560-2073), 팩스(033-563-8395)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의 규정”을 “제3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3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34조”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제34조</u> ----- ----- -----.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 ----- -----.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신 설>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3조(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부과기준) 법 제34조----- ----- -----.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 ----- 따른 ----- ----- -----.

현행	개정안
<u>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u> <u>한 것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징</u> <u>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u> <u>규제법」을, 신용정보 제공 등에</u> <u>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을 따</u> <u>른다.</u>	<u><삭 제></u>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 별로 동일위반 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부 과 대 상	근 거 법 령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13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정선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 및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위행위 분류 및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안 제6조 및 제9조, 별표)항 수정(안 제6조)

3. 예고기간 : 2023. 5. 30. ~ 6. 4.(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4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3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yun2003@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원”을 “의장은 의원”으로,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부터 제101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써 징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개정)

징계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익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공개사과
7.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 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그 밖의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② (생략)

--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써 징계 ----
-----.

1. ~ 6. (현행과 같음)

7.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별표)

현행			개정안		
징계기준(제9조제2항 관련)			징계기준(제9조제2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1. 품위유지 <신 설>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및 조례 제9조제4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 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신 설>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4. 회피의무 <신 설>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신 설>	○ 관리인 검직 시암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공개사과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7. 그 밖의 위반 사항 <신 설>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생략)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생략)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생략)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생략)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생략)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생략)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생략)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생략)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생략)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생략)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생략)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생략)

제18조(성희롱 금지) (생략)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8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6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8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9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0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14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정선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각종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출장비 부담 수령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구금 중인 경우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 제한 (안 제2조의2제1항)
-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제2항, 제3항)

징계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
출석정지 (안 제2조의2제2항)	일반적인 경우 ▶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 1/2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 징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공개회의 경고·사과 (안 제2조의2제3항)	질서유지 의무 위반 ▶ 징계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의 1/2 감액

- 여비 정산 및 부담수령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제6조 및 제7조)

3. 예고기간 : 2023. 5. 30. ~ 6. 4.(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4일까지 정선군의회의회장

(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3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yun2003@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정활동비를” 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의정활동비를” 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여비의 정산)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정산과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등)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u><신 설></u>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 -----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신 설>

<신 설>

<신 설>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
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
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
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
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
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
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6조(여비의 정산)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
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
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
수)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
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신 설>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
분하는 행위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
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
배 상당액으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부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15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정선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5항)
- 나.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안 제6조제2항)
의사담당 → 의정팀장
- 다.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 라. 공무국외활동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안 제8조)

3. 예고기간 : 2023. 5. 30. ~ 6. 4.(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4일까지 정선군의회의회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3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yun2003@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의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사담당” 을 “의정팀장”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정선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허가권자) 제2조 <u>각 호의 1</u> <u>의 규정에 의한</u> 정선군의회의원 (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 무국외활동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제3조(허가권자) --- <u>각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u> <u>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u> <u>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u> <u>하고, 의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u> <u>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u> <u>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u> <u>으로 한다.</u>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 까지와 같음)
제6조(회의) ① (생 략)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의사담당</u> 이 된다. ③ (생 략) <u><신 설></u>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의정팀장</u>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u> <u>정선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u> <u>시하여야 한다.</u>

제8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① 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
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8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①

-----.

<후단 삭제>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